

< 수시 공시 >

2015.1.9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집합투자기구	변경 내용
신영퇴직연금그로쓰채권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신영마라톤 3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,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가입조건 변경, 투자대상 중 파생상품 삭제
신영밸류우선주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,
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
신영프리미엄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
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5호(채권혼합)	
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

2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3. 변경 시행일 : 2015년 1월 9일 (금)

4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